그건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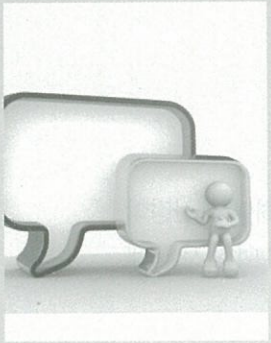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올해 1월 21일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7월 22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 포장물류지 9 · 10월호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본격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올해 1월 21일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7월 22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행령안은 중견기업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물류지 9 · 10월호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견기업 기준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2.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했다.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범위

3. 수탁 · 위탁거래 특례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서의 발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적용대상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다.

4.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육성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기준 및 평가실시,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근거 등을 규정했다.

5. 기 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 시행계획, 지역별 · 업종별 시책 수립절차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 법률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중소기업청은「중견기업 특별법」시행을 계기로 중소 · 중견기업 등이 법률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중견기업 정책의 중 · 장기적 기본틀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업(정부 3.0)으로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 조세 · 금융 등 분야별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지원', '중견-배제' 형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차별적 법령 · 제도를 발굴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령 등을 중심으로 성장 친화적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주요 통계 지표〉

구분	2011년	2012년	비고
중견기업수	1,422개	2,505개	1,083개(76.2%)증가
고용인력	82.4만명	99.6만명	전체기업 대비 비중 8.8%
수출액	603.3억불	703.3억불	전체기업 대비 비중 12.8%
매출액	373조원	560조원	187조원(50.1%) 증가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2013 중견기업 현황'